이때 공의 직위가 의금부의 지사知事였는데 조선조 초기에 지사는 육조와 합문閤門·통례원·사간원·승문원承文院 등에 있는 직임으로 종3품관이었다. 그렇다면 공이 무과급제 8년에 종3품에 오를만큼 무관으로서 고속승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이 파견되는 최규는 도사都事인데 도사는 지방 감영과 경관의 여러 부서에 많이 있는 직임으로 7품에서 5품까지 보임된다. 가령 금부도사라고 하는 무서운 의금부 도사도 이러한 도사인데 종8품부터 보임될 수 있는 직임이다. 별감은 고려와 조선초기에 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이름으로 뒤에 어사御史로 바뀐 직임이다. 체복體覆별감은 임금의 명을 몸소 받아 나가 벼슬아치의 군무軍務에 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임시 벼슬로서 고려와 조선초에 있었으며 체복사體覆使로 부르기도 했다. 요컨대 중요하고 날카로운 직임이었고 정예 관원이 뽑혀 나가는 후일의 암행어사와 같은 직임으로 보면 된다. 경상좌우도는 경상도를 지금과 같은 남북으로 가르지 않고 길게 동서로 갈라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 하였다.

다음 같은 해 세종 7년, 1425년 11월 27일자 실록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임술壬戌 행동교幸東郊 세자호종世子扈從 차우전관천변次于箭串川邊 광방포觀放砲 차명대호군권복次命大護軍權復 호군김윤수등육인사지護軍金允壽等六人射之 이험기포사관갑심천以驗其砲射貫甲深淺 우사군기감又使軍器監 왕광주성산도성백악往廣州城山都城白岳 방신포放信砲 이험포성지원근以驗砲聲之遠近 : 임술일에 동쪽 교외에 행차하니 세자가 호종하였다. 살곶이냇가에 막차를 차리고 포를 쏘는 것을 관람한 다음 대호군 권복과 호군 김윤수 등 6인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이 갑주를 뚫음이 깊고 얕음을 징험케 했다. 또 군기감으로 하여금 광주의 성산과 도성의 백악에 가서 신포信砲(신호로 쏘는 화포)를 쏘게 하여 포성이 멀고 가까움으로 징험케 하였다.

대호군은 오위五衛에 딸린 종3품 무관직이다. 여기에서 전관천箭串川은 살곶이내로서 지금의 살곶이다리가 있는 청계천과 중랑천의 합류처이고 그곳에 세종이 세자 문종을 대동하고 종친 및 백관과 함께 무예를 시범케 하여 일종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 기동훈련이 광주의 남한산성과 백악白岳, 즉 경복궁 뒤 북악산 정상에서 신포를 발사하여 서로 어디까지 들리는지 시험케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 훈련에서 어전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선발된 6인의 특등사수 중 으뜸으로 공이 대호군으로서 시사를 한 것이다.

이후로 공은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와 판통례원判通禮院 등을 거친 것으로 보첩에 나온다. 판사복시사는 사복시의 판사이고 판통례원사는 통례원의 판사이다. 사복시는 나라의 수레와 말 및 마구간·목장의 일을 맡은 관아로 조선초 그 으뜸직에 2인의 판사가 있고 정3품직이었다. 공이 종3품에서 정3품으로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정3품은 상이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당상관이고 하가 통훈대부通訓大夫 당하관이며 무관은 당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 당하가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통례원은 나라의 예절과 의식儀式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판통례원사는 뒤에 좌통례左通禮로 바뀌는 그곳의 으뜸 벼슬이며 정3품관이 보임되는 문관직이다. 공이 무관으로서 문관직의 좌통례에 보임된 것이다.

이후 세종 14년, 1432년 3월 18일자 실록에 공이 병조 우참의兵曹右參議가 되는 기록이 나온다. 이조吏曹와 병조는 관리를 전형銓衡한다고 해서 전조銓曹라 별칭했고, 각조에는 조선조초 판서와 참판 밑에 좌우참의 2인을 두었다. 그러다가 뒤에 각조에는 참의 1인만 남게 되었는데 병조에는 참의 밑에 참지參知를 두어 2인을 유지했다. 좌참의가 위이고 우참의가 다음이니 우참의는 뒤의 참지에 해당한다. 전조의 참의는 요직이었다. 그리고 당상관 통정대부가 아니면 안되었으니 이때 공이 당상관으로서 요직 병조 우참의직에 발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날 같이 인사발령이 난 것을 보면 최윤덕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고 병조 좌참의는 박서생朴瑞生, 형조 좌참의는 황보인黃甫仁이 된다.

같은 세종 14년, 1432년 6월 23일에 공은 병조 우참의로서 왕명을 받아 중국 사신 장동아張童兒를 위로하기 위해 술을 가지고 아목하阿木河에 갔다. 아목하는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會寧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장동아도아목하張童兒到阿木河 명병조참의권복命兵曹參議權復 재주과왕위 酒果往慰 복예태평관사우창성復詣太平館辭于昌盛 성왈盛曰 입경즉사인가야入境則使人可也 경외즉불가境外則不可 : 장동아가 아목하에 도착하니 병조참의 권복에게 명하여 술과 실과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권복이 태평관으로 창성을 찾아가 하직인사를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야인지역) 지경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사역시킬 수 있으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하였다.

여기에서 장동아張童兒는 명나라 황제 측근의 내관內官으로서 조선에 특파된 칙사勅使였다. 장동아는 이보다 8개월 앞선 세종 13년, 1431년 8월 19일에 같은 내관인 창성昌盛·장정안張定安과 함께 3인이 사신오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지금의 독립문 자리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그들을 맞아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들었다. 칙지는 장동아 등에게 중국 관군 150명을 달려 보내니 그들을 도와 조선에서 나는 해동청海東靑(사냥매)과 황응黃鷹(갈지개, 1년생 사냥매)·백응白鷹(깃이 흰 상서로운 매)·토표土豹(시라소니)를 잡아보내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공朝貢이고 그에 대한 중국의 회사回賜가 있어 일종의 무역거래였으나 상국이 군사까지 거느리고 와 사냥을 해 가니, 그들의 식량을 보급하고 수발해야 하는 부담이 큰 일이었다. 이러한 장동아는 사신으로 온 지 석달열흘쯤 뒤인 동년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임금이 직접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나가 연회로써 전별餞別하였다. 이렇게 돌아간 장동아는 이듬해인 세종 14년, 1432년 3월 27일에 다시 해동청 등을 잡으러 백두산白頭山으로 오게 되는 기사가 우리 실록에 나타난다. 중국에 성절사聖節使로 간 전시귀田時貴가 서계書啓한 바인데 '장동아가 지금 백두산의 야인지면野人地面(지방)을 향하는데 해동청을 포획해 가려는 것이고 창성昌盛·윤봉尹鳳·장정안張定安 또한 본국(조선)을 향하는데 함길도咸吉道에서 매를 포획해 가고자 하여 칙서勅書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칙서는 야인 지경에서 매를 잡을 군사가 4백명인데 이들을 위한 군량을 운송할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받아보고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지금 장동아가 요동遼東에서 직접 우리의 후문後門에 도착하는데 거느린 군사가 4백이다. 이제 반드시 군량을 운송해주어야 하는데 함길도에서 국고國庫로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다른 도에서 곡식을 수송한다면 그 폐가 말할 수 없을 터인즉 어찌 처치해야 좋겠느냐'고 걱정한다. 이후로 동년 4월 3일자 실록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장동아가 두목頭目(군관) 4백명을 거느리고 해동청을 포획하는데 4·5·6월 석 달이 지난 후 7월부터 시작하며 너희 나라가 이를 지실하고 조달하라는 황제의 칙지가 있고, 동년 5월 29일자 실록에는 백두산 등처에 있는 장동아 등을 위한 군량 480석을 요동에서 운반해야 하는데 인력난이 심하며 태감太監 창성·윤봉尹鳳과 감승監丞 장정안에게 칙서를 주어 보내니 인력을 차출해 운량케 하라는 황제의 칙지가 나온다. 어쨌든 장동아가 이처럼 많은 무리로 백두산 근처에 와 머물며 매를 잡는다고 오래 폐를 끼치니 나라에 큰 부담이었다. 그 거느린 무리가 많으면서도 조선 인력으로 운량을 하라고 하니 문제였다. 이러할 때에 공이 왕명을 받아 주과를 가지고 아목하까지 장동아를 위접慰接하러 갔다. 그런데 주과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군량을 운송할 인력도 함께 조달해야 하였다. 태평관太平館은 지금의 서울 태평로에 있던 중국 칙사를 위한 영빈관迎賓館이고 여기에 사신온 창성이 머물고 있으므로, 공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창성을 그곳으로 찾아가 왕명에 의거 아목하로 떠나게 되었음을 고하고 하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공이 하직 인사를 하니 창성이 '지경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사역하는 게 가능하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한 것은 조선 국경을 넘어 야인지역에 들어가서는 운송 등의 일에 그쪽 인력을 사용함이 가하나 들어가기 전 조선 지경에서는 불가하니 조선 인력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장동아·창성같은 중국 사신이 와서 수개월 또는 한 해 내내 머물며 매잡이 등을 하는데 이를 수발하는 것이 조선 조정으로서 여간 까다롭고 또한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를 공이 병조참의로서 궂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은 뒤에도 이와 관련된 일에 왕명을 받는 것으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구묘표석의 탄흔

동년 세종 14년, 1432년 11월 16일자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명의우정부왈命議于政府曰 증이유은지曾以柳殷之 동사신진응同使臣進鷹 금차견참의권복今差遣參議權復 즉무내이위비관호則無乃以爲卑官乎 개견양부이상하여改遣兩府以上何如. 첨왈僉曰 칭사즉수참의稱使則雖參議 중조대지여일中朝待之如一 무해어의無害於義 연시불난然是不難 개차위편改差爲便 수이호조참판박신생대지遂以戶曹參判朴信生代之 :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케 하기를 '전에 유은지柳殷之를 (중국) 사신과 같이 (사신으로) 가서 매를 바치게 하였으니 지금 참의 권복을 차출해(사신으로) 보내면 관직이 낮다고 하지 않겠는가? 양부兩府(의정부와 중추부) 이상에서 고쳐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가 '사신을 칭하면 비록 참의라 할지라도 중국 조정에서 똑같이 대우하니 의리로는 해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쳐 차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호조참판 박신생으로 대신하였다.

여기에서 공은 매를 포획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동아·창성 등 중국 사신과 동반하여 중국에 가 황제에게 본국의 매를 바치는 진헌사進獻使로 발탁이 된 것이다. 이는 공이 그동안 장동아·창성 등과 직무로서 밀접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공이 참의로서 진헌사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 직위가 경대부卿大夫인 2품관이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임금이 이를 염려해 전에도 진헌사로 경대부인 유은지를 보냈으

4면으로 계속

▲ 화산부원군 묘소의 측면(왼쪽)

▲ 6·25동란으로 파훼된 화산부원군 묘소의 구묘표석.